

■ 지원의 종류 및 세부내용 ■

지원 종류	지원 내용	구체적 내용	지원 금액	지원 방법
생활지원	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	가.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. 숙식 제공	월 50만원 이내	매월 1회
건강지원	청소년이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	가. 진찰·검사 나.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 다. 처치·수술, 그 밖의 치료 라. 예방재활 마. 입원, 바. 간호 사.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* 비급여 제외, 본인부담액 지원	연 200만원 (220만원 한도)	1년 또는 매월
학업지원	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,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	가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*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나. 교과서대 다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·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	월 15만원 이내 (수업료, 학교운영비) 월 30만원 이내 (검정고시)	월 1회, 분기별, 1년 등
자립지원	취업을 위한 지식기술·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	가.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. 진로상담 비용(적성·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) 다. 직업체험 비용 라.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	월 36만원 이내	월 1회, 분기별, 1년 등
상담지원	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·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	가. 정신적·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. 상담관련 프로그램 * 집단상담,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	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(연 25만원) 별도	월 1회, 분기별, 1년 등
법률지원	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	가. 소송비용 나. 법률상담비용	연 350만원 이내	1회 지원
활동지원	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	가. 수련활동비 나. 문화활동비 다. 특기활동비 라. 교류활동비 등	월 10만원 이내	월 1회, 분기별, 1년 등
기타지원	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	가. 청소년이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. 청소년의 교복 지원, 수학여행비 지원 등	(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)	월 1회, 분기별, 1년 등